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15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5. 11. 17.
- 3) 회부연월일 : 2025.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방산업체등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202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¹⁾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산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대상 및 수준별 수요를 고려하여 고급인재·실무인력 양성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과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주요내용(2025년 기준)]

구 분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 상		방산업체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자(참여기업)	대졸 구직자 및 직업계고 학생
목 적		국방첨단기술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실무인력(사업·품질관리 분야) 및 기능인력(제조·생산 분야) 양성
규 모		국방우주, 국방무인로봇·AI 2개 분야, 5개 대학(87명)	1개 주관대학, 52명 (대졸 구직자 32명, 직업계고 학생 20명)
예 산	'25	9.65억원 집행	5억원 집행
	'26	13.06억원 예산액	11.5억원(박람회 포함) 예산액
사업내용		방산분야 첨단학과 석박사 학위과정(2년) 이수 지원	방산기업 맞춤형 교육 (120시간) 실시 및 취업 연계 지원
지원내용		학생 등록금(전액 또는 일부) 및 학과 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지원	주관대학 교육과정 운영비 및 교육생 교육수당, 직업계고(협력기관) 교육 운영비 등 500백만원 지원
비 고		입학 전 취업약정 체결 (취업률 100%)	교육 전 취업약정 체결 (직업계고 학생 과정)

* 자료: 방위사업청

□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은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2026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14억 6,500만원에서 24억 5,6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비용 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임.

다만, 2026년 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²⁾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기술 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대하여 비용 보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중소·중견 방산업체는 주로 방산물자의 소재·부품·장비를 체계 업체(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재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고용해 방산혁신 분야 등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³⁾ 특히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측면에서 대기업 대비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024년도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2025.12.)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468개사)의 방산연구원 총 10,684명 가운데 대기업 8,734명 (81.8%), 중견기업 865명(8%), 중소기업 1,085명(10.2%)으로 연구 인력이 대기업에 편중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⁴⁾

개정안은 이러한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방위산업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4년도 총 41번 개최한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상당수가 인건비 지원을 희망함.

4) 방산연구원 중 석·박사 학위소지자인 고급인력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견/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성화가 제한됨. * 기업규모별 방산연구원 대비 석·박사 비중 : 대기업 47.7%, 중견기업 34%, 중소기업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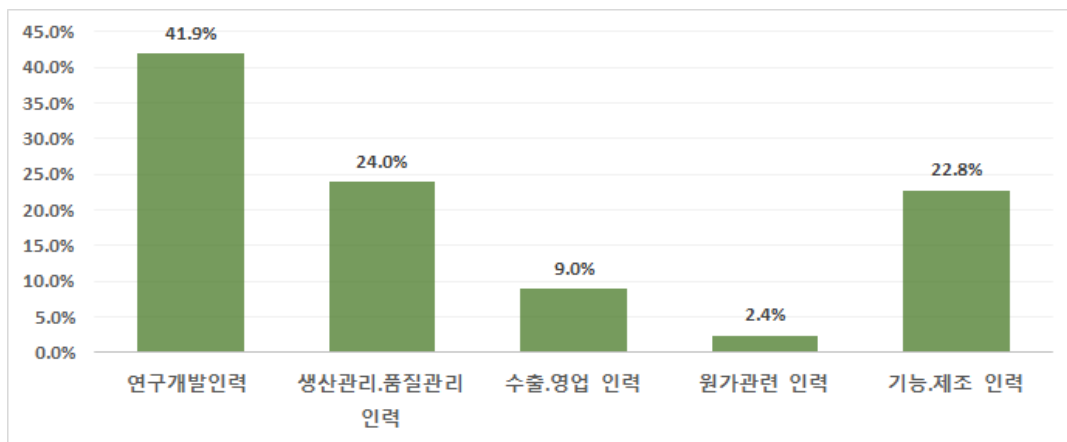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는 고용 지원대상을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산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청의 방산 중소기업(124개사) 인력수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2023.3.) 결과에 따르면, 방산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 분야는 연구인력(41.9%), 생산관리·품질관리인력(24.0%), 기능·제조인력(22.8%), 수출·영업인력(9.0%) 순으로 나타남.

[중소 방산업체 인력분야별 채용 선호도]



* 자료: 방위사업청 제공 자료 재구성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연구인력 외에도 품질관리, 기능제조 인력까지 포함될 수 있기에 방산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지원 취지가 반감될 수 있음.

현재 국방기술 개발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산분야 전문인력 중 국방우주, AI, 무인로봇 등 첨단분야 R&D 과제를 수행할 연구인력 분야 고용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은 연구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중견·중소 방산업체의 기술 혁신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⁵⁾를 참조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⁶⁾에서 고용하는 연구인력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⁷⁾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연구인력채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

□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전문인력 고용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일반법 형식으로 고용지원을 유지하면서 향후 계속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여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개정안처럼 한시적으로만 운용하고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한정된 재원, 다른 분야 업체와의 형평성 및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간 개정안과 유사한 유효기간 입법례⁸⁾에서 기한을 두는 것이 형식적 일몰에 그치고 사실상 상시제도화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면 개정규정의 효력을 두지 않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 확보, 혁신, 성장 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긍정적인임.

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는 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연구인력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지는 않음.
8)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다만, 전문인력 중 연구인력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지속적인 고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함.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전문위원 수정의견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u>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 <u>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삭 제></u>

- 한편, 방위사업청은 동 개정안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 예산안을 2027년도부터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이에 따르면 방산 전문인력 신규·경력 채용 포함하여 2027년도에는 60명을 선발하여 기준연봉의 50% 규모로 비용지원을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원인원 및 예산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임.

[방산 전문인력 고용지원사업 계획(안)]

□ 지원 계획(안)

- 방산분야 전문인력(신규·경력) 채용 인건비 직접 지원을 위한 연도별 60명 규모 신규 지원인원 선발 및 해당 규모 기준 비용추계
- 기업-인력을 매칭하여 3개년도 지원 협약 체결(3년 지원 후 협약 종료)

구 분	지원규모		지원단가	비고
전문인력 (연구·실무인력) 신규 채용 지원	50명	학사 30명	기준연봉*의 50%	○ 지원트랙별 기업당 1명 內 지원 ○ 트랙 통합 기업당 2명 內 지원
		석사 10명		
		박사 10명		
방산분야 경력 채용 지원	10명		연봉의 50% (연간 50백만원 內)	

* (기준연봉)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하는 최소연봉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지원 기준연봉(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준연봉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32	35	38
석 사	41	45	49
박 사	50	55	6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25년 기준연봉 적용

□ 재정 소요(비용 추계)

○ (연도별 예산 추계) 총 18,120백만원 소요('27~'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7	'28	'29	'30	'31	계
연구·실무인력	935	1,960	3,075	3,075	3,075	12,120
신규 채용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지원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50명	100명	100명	100명	
경력 채용	500	1,000	1,500	1,500	1,500	6,000
지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10명	20명	20명	20명	
합 계	1,435	2,960	4,575	4,575	4,575	18,120

* 산출식: (신규직 채용 지원) 연차별(신규/계속) 기준연봉 × 0.5 × 지원인원
(경력직 채용 지원) 지원상한액(50백만원) × 지원인원

* 자료: 방위사업청 제공 자료 재구성

문 의 처

02)6788-5312